

## 1. 미국 통상법 301조

- 미행정부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조사한 이후 3차에 걸쳐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함
  - 1차 : 340억 달러 (818개 품목 - 리스트1)에 대한 25% 추가관세를 2018년 7월 6일자로 부과
  - 2차 : 160억 달러 (284개 품목 - 리스트2)에 대해 2018년 8월 23일자로 25% 추가관세를 부과
  - 3차 : 2,000억 달러 (5,745개 품목 - 리스트3)에 대한 10% 추가관세를 2018년 9월 24일자로 부과
- 미행정부가 리스트3에 대한 추가관세를 2019년 1월 1일부터 25%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나, 향후 양국 간 무역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5% 인상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음

## 2. 미중 무역협상 현황

- 이후 지난 2019년 5월 9일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미행정부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현재 2,000억불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목(5,745개 품목 - 리스트3)에 대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 10%를 25%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추가 관세 25%는 5월 10일 수입 통관일자부터 적용되며 이와 관련, 미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발표함
  1. 2019년 5월 10일(미 동부시간 기준) 혹은 이후 수입통관이 되고, 5월 10일 이후에 미국으로 수출된 중국산 상품은 다음과 같은 품목번호와 추가 관세율이 적용됨
    - 품목번호: 9903.88.03 or 9903.88.04
    - 추가관세: 25%

2. 2019년 5월 10일 이전 중국을 출발한(수출일자) 상품의 경우 2019년 6월 1일 이전에 수입통관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품목번호와 관세율이 적용됨
- 품목번호: 9903.88.09
  - 추가관세: 10%

- 따라서, 2019년 6월 1일 이후 수입 통관되는 모든 중국산 상품에는 추가관세 품목번호 9903.88.03과 9903.88.04 가 적용되어 25% 추가 관세가 부과됨
- 여기서 말하는 “중국산” 은 미 관세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른 중국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순히 중국에서 수출된 상품이란 뜻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함

### 3. 시사점

- 식품의 경우 추가관세가 10%일 때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5%의 추가관세는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 예를 들어 03류의 수산물 일부 품목(전복, 굴, 홍합 등)과 08류의 과일(배 등)의 경우 영향이 있을 수 있음
- 아울러 중국제품에 대한 고액관세로 인해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

### 4. 관련 웹사이트

- 미국 무역대표부(USTR ;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)  
<https://ustr.gov/issue-areas/enforcement/section-301-investigations/section-301-china/record-section-301>